

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1458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6년 10월 31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에서는 시민중심 맞춤형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정전문상담기관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시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중심의 소통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을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.
- 나. 이에 따라 2017년 설립예정인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의거 120다산콜재단 출연여부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출연 개요

- 대상기관 :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
- 관련법령 :
 - (공동)법령 : 민법(제32조),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 - 조례 :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

“시장은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.”

나. 주요 사업

-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
 - 시정·구청 상담서비스 제공
 - 시민소통 상담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분석
 - 상담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
 - 시민중심 맞춤형 상담서비스 발굴
 - 시정상담 서비스의 효과적 전달방안 연구
 - 시정 특수목적 및 임시 상담서비스 수탁 수행
 - 재단 사업관련 업무시설 관리
 - 상담관련 전산장비 구축·운영 및 관리
 -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
다. 출연의 필요성

- 시민중심 맞춤형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정전문상담기관 기능수행을 위해 재단 출연금 및 현물출연 필요
 -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를 통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 필요
 - 정보통신 환경 발달로 단순상담에서 전문상담 또는 특화상담 수요 증가
 - 상담관련 과학적 데이터 축적과 분석을 통해 시정서비스 개발 및 제공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

-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나. 조치사항 : 2017년도 예산편성 및 현물출연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시민봉사담당관 120운영팀 오정환 (☎2133 -6548)